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2576번
- 제 안 자 : 최윤희 의원(찬성의원 20명)
- 제 안 일 : 2025년 3월 31일
- 회 부 일 : 2025년 4월 2일

2. 제안이유

- 「평생교육법」 제28조제3항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부재함.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내 평생교육기관의 시설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및 사고 발생 시 보상 조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용자 안전조치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5조의4).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25. 4. 5. ~ 4. 9.)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은 서울시 평생교육기관의 시설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및 사고 발생 시 보상 조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발의하였음(안 제5조의4).
- 안 제5조의4는 「평생교육법」(이하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에게 부과된 의무인 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가입 등 의무화)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5조의4(이용자 안전조치)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u> <u>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u> <u>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u> <u>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및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u>

※ 「평생교육법」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③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가목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법(제28조제3항)에서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5조의4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하겠음.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총 16개 시·도 조례에 관련 규정(안전조치 의무화)을 반영하고 있음(별첨).
- 안 제5조의4 제1항은 ‘평생교육기관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가입 기준’을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시설 이용자 손해보상에 대한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및 운영자의 신속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현재 평생교육기관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가입 기준은 16개 시·도 모두 동일한 금액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 이용자 손해보상에 대한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이를 규정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내 서울시민대학 캠퍼스(중부권, 동남권, 모두의학교, 다스가는캠퍼스) 모두 '1인당 배상금액 3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30억원 이상'으로 보험가입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였고,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해당 평생교육시설 총 1,439개소('25.3월말 기준) 중 803개소에서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되어 있다고 자료를 제출하였음¹⁾.

※ 교육청은 기준(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에 미달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추후 갱신시 배상금액을 상향토록 조치하였음.

- 본 개정안에 대해 평생교육국은 평생교육기관 설치자 및 운영자에 대한 이용자 안전조치 이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동의한다는 의견(원안 동의)을 제출하였음.
- 다만, 법에서 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그 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법 제42조), 지도·감독(법 제42조의2) 권한은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례 개정 시 서울시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전 문 위 원	정 찬 일	입 법 조 사 관	최 현 종
---------	-------	-----------	-------

1)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8729호(2025.4.11.)에 따르면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서울시 소재 평생교육시설은 총 2,871개이나, 비대면교육을 실시하는 원격평생교육시설(1,432개)을 제외한 총 1,439개를 대상으로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여부를 조사함. 자료 미제출(636개)에 대해서는 1) 최초 설립시에는 보험가입 하였으나, 설치자 지위승계 이후 연락이 불가한 경우, 2) 신설 신고 수리로 인해 보험 가입이 진행 중인 경우, 3) 시설의 기간 내 회신이 없어 확인이 불가한 경우 4) 현재 운영하지 않아 휴원 및 폐쇄 예정인 경우(*지도.점검 예정) 등을 명시하고 있음.

별첨. 시설 이용자 안전조치 의무화 관련 조례 현황 (16개 시·도, '25.3월말 기준)

연번	조례명	관련 조항
1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1조(학습자 안전조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명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2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8조(학습자 안전보험 등의 가입)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명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3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31조(이용자 안전조치) ① 법 제28조제3항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및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4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3조(학습자 안전조치)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2018.5.1,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1. 1인당 배상금액 1억 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 원 이상 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및 운영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3조(보험 등의 가입)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보험 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명당 배상 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6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6조(학습자 안전 보험가입)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1명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3조(학습자 안전조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1. 9. 24.] 1. 1명당 배상금액 1억 원 이상 2. 사고당 배상금액 10억 원 이상
8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7조(학습자 안전조치)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명당 배상 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수강생에게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6조(학습자 안전 보험가입)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1. 1명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10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3조(시설이용자 안전 보험가입) ① 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명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5조(학습자 안전조치)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학습자가 수강 중에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평생교육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사업의 가입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명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12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6조(학습자 안전 보험가입)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 원 이상 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3	전라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7조(학습자 안전 보험가입)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14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학습자 안전 조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법제28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6조(학습자 안전 보험가입)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1명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6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8조(학습자 안전조치) 평생교육기관 설치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1. 1명당 배상 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